

## 좀도리우대저축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금고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(예금거래 기본약관, 적립식 예금약관, 좀도리우대저축 특약)이 적용됩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좀도리우대저축
- 상품의 특징 : 새마을금고의 사랑의 좀도리 운동과 연계한 “좀도리기금”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공익 자유적립식 예금

### 2 거래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| 구 분     | 내 용   |
|---------|---|
| 가입대상    | 제한 없음   |
| 계약금액 한도 | 1회차 1만원이상. 월간 입금액은 2천만원 이내 (단, 신규일 1개월 내에는 제한없음)  |
| 계약기간    | 1년  |
| 이 율     | 이율표 참조<br>① 기본이율 :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적용<br>② 만기 후 이율 :<br>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 - 만기일 고시된 정기에탁1년 기본이율 1/2 적용<br>만기일로부터 1년 초과 - 지급일 현재 온라인보통예탁금이율 적용   |
| 세제관련    |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저축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|
| 세율안내    | ○ 일반과세<br>이자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<br>○ 세금우대저축(단계별적용)<br>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: 이자소득세 0%, 농특세 1.4%<br>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: 이자소득세 5%, 농특세 0.9%<br>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: 이자소득세 9%, 농특세 0.5%<br>○ 비과세종합저축(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)<br>이자소득세 0%, 농특세 0%<br>○ 생계형저축(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)<br>이자소득세 0%, 농특세 0%<br>○ 세금우대종합저축(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)<br>이자소득세 9%, 농특세 0.5%<br>※ 세율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이자지급방식      | 만기 일시지급  |
| 출연기금        | 1회차 납입액의 0.1%를 줌도리 기금으로 출연(소득 공제 영수증 발행)   |
| 제한사항        | 계좌를 분할하거나 만기 앞당김을 할 수 없다.  |
| 예금자<br>보호여부 | <p>해당 :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,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 <p>▶ 소정의 이자란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.</p> <p>▶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02)2145-9114, www.kfcc.co.kr)</p> |

### 3 유의사항

이 예금을 영업점에서 가입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영업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 저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([www.kfcc.co.kr](http://www.kfcc.co.kr))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